

# 개인정보보호규정

2021. 04. 19 개정

HYUNDAI

현대이지웰

# 목 차

<b>제 1 장 총 칙</b> .....	<b>4</b>
제 1 조 (목적).....	4
제 2 조 (적용범위) .....	4
제 3 조 (용어의 정의).....	4
제 4 조 (책임사항) .....	5
<b>제 2 장 개인정보보호정책</b> .....	<b>5</b>
제 5 조 (개인정보보호정책과 지침).....	5
제 6 조 (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).....	6
제 7 조 (개인정보보호지침의 수립).....	6
제 8 조 (개인정보보호지침의 검토).....	6
제 9 조 (개인정보보호지침의 개정).....	7
<b>제 3 장 관련 지침서</b> .....	<b>7</b>
제 10 조 (관련 지침서).....	7
<b>부칙</b> .....	<b>8</b>
제 1 조 (시행일).....	8
제 2 조 (준용).....	8
제 3 조 (예외적용) .....	8

<b>개인정보보호규정</b>	<b>문서번호</b>	<b>개정번호</b>
	ISMS-SP-02	1.30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은 (주)현대이지웰(이하 "회사"라 함)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상위 정책으로서 비인가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, 훼손, 변조, 유출 등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상위 정책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, 계약관계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에 접근하는 모든 외부인력에게도 적용된다.

### 제 3 조 (용어의 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"개인정보"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·문자·음성·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- ② "개인정보보호책임자"란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처리를 최종 결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.
- ③ "개인정보보호관리자"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부터 위임 받아 개인정보보호 업무 절차를 총괄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
- ④ "개인정보보호담당자"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⑤ "개인정보처리자"란 회사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.

<b>개인정보보호규정</b>	<b>문서번호</b>	<b>개정번호</b>
	ISMS-SP-02	1.30

#### **제 4 조 (책임사항)**

- ①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은 전 임직원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및 지침을 모든 임직원이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모든 임직원이 본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여 생활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, 개인정보보호조직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.
  - 2. 법적, 규범적, 해당 감독기관의 요구사항이 만족되어야 한다.
  - 3. 모든 임직원에게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이 배포되거나 또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.
  - 4.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반은, 실제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모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,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이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.
  - 5.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규정 및 지침의 유지관리 및 이행을 위한 제제 및 지침 제공의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다.
  - 6. 개인정보보호관리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그들의 업무 범주 내에서 방침의 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다.
  - 7. 이 규정을 지키는 것은 모든 임직원 각자의 책임이다.

## **제 2 장 개인정보보호정책**

#### **제 5 조 (개인정보보호정책과 지침)**

- ① 개인정보보호정책·지침의 체계는 1개의 규정, 1개의 지침으로 이루어진다.
- ② 규정은 회사의 최상위 개인정보보호규정으로 정책 및 지침의 체계를 선언한다.
- ③ 지침은 임직원 및 실무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직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 역할 및 수행 내역을 정의한다.
- ④ 회사 고객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개인

<b>개인정보보호규정</b>	<b>문서번호</b>	<b>개정번호</b>
	ISMS-SP-02	1.30

정보보호규정과 지침의 회사 내 정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- ⑤ 본 규정에 제시된 문서와 지침들은 회사 고객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모두 준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⑥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대외비 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한다.

#### **제 6 조 (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)**

- ① 회사의 업무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를 분석하여 사업 수행 시에 영향을 중심으로 정책 수립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나 관련 산업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과 규제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.

#### **제 7 조 (개인정보보호지침의 수립)**

- ① 개인정보보호규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적용대상의 상이한 보안 요구 수준을 고려하여 작성한다.
  - 1. 개인정보보호지침 항목을 도출한다.
  - 2. 대상이 되는 자산 및 업무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지침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.
  - 3. 지침을 작성, 적용 검토 및 수정한다.
- ②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대외비 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한다.

#### **제 8 조 (개인정보보호지침의 검토)**

- ① 개인정보보호조직은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지침의 타당성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, 다음의 경우가 발생했을 시에는 추가 검토를 수행하여 변경할 수 있다.
  - 1. 관련 법, 규제상의 변화

<b>개인정보보호규정</b>	<b>문서번호</b>	<b>개정번호</b>
	ISMS-SP-02	1.30

2. 회사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중대한 변화
3.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
4. 새로운 위협 또는 취약성의 발생 등

### **제 9 조 (개인정보보호지침의 개정)**

- 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새로운 요구사항이 도출되거나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지침의 검토결과 개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임직원에 의해 개선안, 이의, 불편사항, 문제점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.
  1. 개인정보보호조직은 관련 전문가와 해당 실무자들과 함께 개정요인을 검토 후 개정한다.
  2.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검토를 거친 후 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3.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정된 규정 및 지침 사항을 모든 사용자에게 공지하고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.

## **제 3 장 관련 지침서**

### **제 10 조 (관련 지침서)**

본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적용을 위해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별도로 규정한다.

<b>개인정보보호규정</b>	<b>문서번호</b>	<b>개정번호</b>
	ISMS-SP-02	1.30

## **부칙**

### **제 1 조 (시행일)**

본 규정은 최고경영자의 승인 시점일로부터 시행한다.

### **제 2 조 (준용)**

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,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규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**제 3 조 (예외적용)**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서 명시한 내용이라도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예외 취급할 수 있다.

- ① 기술 환경의 변화로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
- ② 기술적, 관리적 필요에 따라 지침의 적용을 보류할 긴급할 사유가 있을 경우
- ③ 기타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경우